

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 의무 현황  
- 법제처 관련 -

국회입법조사처  
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

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

입법조사관 백상준

Tel. 788-4544/Fax. 788-4549

E-mail: june@assembly.go.kr



# 요 약

## 질의 요지

1. 중장기 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정부행정 현황 및 각 건별 근거법률
2. 정부행정의 중장기 계획수립의 실효성 또는 필요성 논의와 관련한 기존 연구 및 주요내용
3. 해외 주요국의 중장기 계획수립 동향
4. 정부 중장기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

(회답일 2016.11.28.)

## ■ 조사·분석 방향

- 관련 문헌 및 법령 참조

## ■ 주 요 내 용

- 법제처에 중장기계획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은 발견되지 않음
- 다만, 대통령령이 법제처에 중·장기 입법계획 수립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는 조사됨(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10조의2)
  -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법제처가 동조에 따른 중·장기 입법계획을 별도로 수립·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, 매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때 중·장기 입법계획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고 답변하였음

# 목 차

1. 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 의무 현황 등 ..... 1



국회입법조사처  
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

본 조사회답서는 국회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.  
오직 의정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1. 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 의무 현황 등

## □ 조사방향 및 결과

- 법률이 법제처에 중장기계획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를 조사함
- 조사 결과 : 해당사항 없음

## ※ 참고

- 다만, 대통령령(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10조의2)이 법제처에 중·장기 입법계획 수립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음

### •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(대통령령)

####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·시행

제4조(입법계획의 총괄·조정) 법제처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령안의 입법계획을 총괄·조정한다.

제5조(부처입법계획의 수립) ① 법제처장은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의 작성방법, 제출 시기,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(이하 "법령안 주관기관의 장"이라 한다)은 제1항에 따른 통보 내용에 따라 해당 연도 주요 업무계획 등의 추진에 필요한 법령안의 연간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6조 ~ 제7조 (생략)

제8조(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)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종합하여 **해당 연도에 정부에서 추진할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되**, 정부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일정, 중복·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9조 ~ 제10조 (생략)

제10조의2(중·장기 입법계획) 법제처장은 국가정책의 중·장기 예측가능성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**중·장기 입법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** [본조신설 2004.1.9.] [전문개정 2010.10.5]

-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법제처가 동조에 따른 중·장기 입법계획을 별도로 수립·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, 매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때(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8조 등) 중·장기 입법계획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고 답변하였음